

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사업 주요 질의 내용 정리

◎ 이동·휴대가 용이한 전기·기계기구 및 수공구(지원불가 사항) 관련

<지원 불가>

- 해당 설비를 밀거나 끄는 등 이동하면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

<지원 가능>

- ① 고정된 배관 등에 고정 연결되어 이동하면서 작업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바퀴 등이 제거됨에 따라, 이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
- ③ 바퀴가 있더라도 고중량 등의 이유로 이동하면서 작업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◎ 설비(기존 - 개선) 지원 예시

<지원 불가 예시>

- ① 전단기(절단기) ↔ 레이저 가공기
- ② CNC선반 ↔ 호빙기 또는 레이저 가공기
- ③ 드릴기 ↔ MCT

<지원 가능 예시>

- ① NCT·프라스마 절단기 ↔ 레이저 가공기
- ② 범용 선반 ↔ CNC 선반
- ③ 파이프 톱절단기 ↔ 파이프 레이저 절단기

◎ 기존 수작업을 설비 도입으로 공정개선 지원 가능한 경우

- ① 도장부스와 같이 특정 장소로서 고정된 설비를 이용해서 수작업을 하는 표면처리공정 (도장, 도금, 쇼트 등)
- ② 운반, 포장과 같은 인력 보조작업을 자동화공정(컨베이어, 취출로봇 등)으로 대체하는 경우
- ③ 고정된 설비*를 이용한 인력 용접작업을 로봇형 용접기(자동화설비)로 대체하는 경우

* 휴대형 직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하는 수작업은 '고정된 설비'가 아니기(이동·휴대용 설비이기) 때문에 지원 불가합니다.

◎ 문의처

- (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) 정주호 대리, 02-368-8489 (사업 절차 문의)
- (산업안전보건공단) 정영성 과장, 052-703-0766 (지원 가능 여부 문의)